

신공법

공동주택 (APT) 의 오·배수관(욕실배수 / 대변기배수) 합병 (Single Line) 에 대하여 II

지난 4월호 신공법란에 게재된 「오·배수 배관을 분리배관에서 단일배관 시공방법으로」가 많은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이번호에는 오·배수 배관을 단일배관 시공함에 있어서 기존의 관계법령이나 시공상의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보충설명을 게재합니다.
 게재된 내용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편집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APT의 배관공사는 옥내 배관공사와 옥외 배관공사로 구분한다.

또 APT 각 동에서 건물 외벽기준 1m 정도를 공사구역의 책임한계로 나누고 옥내 공사는 기계설비공사 도면에, 옥외공사는 토목공사 도면에 분류되어 명시된다.

본고에서는 이미 토목도면에 단지내 옥외 오·배수관이 합병되어 있어서 정화조 및 정화시설 법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나 대부분의 설비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살펴보자.

제4조 오수정화 시설 설치지역등에 관하여 :

공동주택 단지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는 오수정화 시설을 해야 하지만 하수도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으로서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도 설치지역 및 합류식 관거가 설치된 지역과, 환경처 장관이 건설부 장관과 협의하여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지

정, 고시한 지역은 오수 정화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

제5조 분뇨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할 건물등 :

대통령이 정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공원, 광장, 기타 공중의 집합소 또는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종말처리장의 처리 구역으로서 합류식 관거가 설치된 지역의 건물, 기타 시설물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종말처리 구역으로서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의 건물, 기타 시설물과 환경처 장관이 분뇨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분뇨정화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조는 오수정화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과 제5조는 분뇨정화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 관해서였다. 제5조에서와 같이 분뇨정화조가 없다면 공동주택에 오수 배수는 하수도에 바로 연결되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

“하수도법 규정에 의해 건설된 종말 처리장의 처리구역으로서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도 설치지역 및 합류식 관거가 설치된 지역과 환경처 장관이 건설부 장관과 협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은 오수 정화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

지내 옥외 토목 오·배수 평면도를 살펴보면 오수 배수가 ONE LINE SYSTEM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옥내 오수·배수공사를 분리할 필요가 없고 외국에서와 같이 SINGLE STACK으로 합병하

여야 한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합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우수, 오수 배수 하수도 관이 분류식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지역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이 계속되어 지고 있으며 하수도 배관도 분류식으로 되어지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설비배관도 SINGLE LINE SYSTEM으로 전환하여야 원가절감을 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SYSTEM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분당 신도시 지역 및 평촌 신도시 지역 등이 있으며 기타 가능한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예측될 것으로 보여진다.

